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1호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02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재결정보시스템 위탁기관 지정

1. 위탁기관 지정 목적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

2. 위탁받을 기관 : 한국감정평가사협회

- 대표자 : 회장 양길수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

3. 위탁업무의 내용(시행령 제24조의2의 업무)

- ① 재결정보체계의 개발·관리 및 보안
- ②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·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
- ③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
- ④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
- ⑤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
- ⑥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

4. 위탁기간 :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